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콘텐츠 상점 리뉴얼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는 도내 콘텐츠 관련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협업을 통한 상점 리뉴얼 지원하는 「콘텐츠 상점 리뉴얼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04. 03.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1 개요

1. 사업 목적

- 경북 도내 콘텐츠 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상점 리뉴얼
- 지역 상점의 특색에 맞는 맞춤형 캐릭터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해 상점 경쟁력 강화 및 고객·매출 증대

2. 사업 개요

사업명	콘텐츠 상점 리뉴얼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04. 03.(수) ~ 04. 26.(금), 18:00까지		
과제 수행 기간	협약체결일 ~ 2024. 10. 31.(목)		
지원 내용	총40,000,000원(사천만원) - 콘텐츠 상점 리뉴얼 과제 1~2개 지원 ※ 자부담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2회 분할 지급 : 1차 70%, 2차 30% 지급		
지원 대상	공고일 이전 <u>경북도 내 주소지</u> 를 둔 콘텐츠기업과 소상공인 점포		
	주관기업	캐릭터 개발 및 디자인이 가능한 콘텐츠 기업 (4년차 이상, 입주기업의 경우 연차 제한 없음)	신규 고용 1인 必 (3개월 이상)
	참여기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가게로 고객 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가게	제외 대상: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숙박 업소 등
지원 분야	- 상점 특색에 맞는 캐릭터 개발 ※ 필수 - 디스플레이 디자인(상점 내·외부 공간 리뉴얼) - 상품 및 인쇄물 디자인(상점에 필요한 제품이나 인쇄물 관련) - 브랜딩 및 마케팅(상점 브랜드 개선 및 마케팅 지원) ※ 간판, 기계설비, 가구집기 등 (처분 가능한) 자산 취득성 품목 지원 불가, 단순 '가성품' 구매 지원 불가		

※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일정 및 세부 내용

1. 사업 기간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04. 03.(수) ~ **04. 26.(금), 18:00까지**
- 과제 수행 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0. 31.(목)

2. 지원 내용 : 콘텐츠 상점 리뉴얼 1~2개 과제 지원

- 총 40,000,000원(사천만원) ※ **지원금 대비 자부담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2회 분할 지급 : 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3. 지원 대상

- 공고일 이전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콘텐츠 기업과 소상공인 점포
※ 추후 HCN 경북방송과 연계한 방송 프로그램 송출이 가능한 기업과 점포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주관기업	캐릭터 개발 및 디자인이 가능한 업체 (4년차 이상, 입주기업의 경우 연차 제한 없음)	신규 고용 1인必 (3개월 이상)
참여기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가게로 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가게	제외 대상 :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숙박 업소 등

※ 주관기업이 참여기업(점포)을 자체 선정하여 지원

4. 지원 분야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캐릭터+디스플레이, 캐릭터+상품 관련 디자인 등 콘텐츠를 활용한 상점 리뉴얼 비용

지원 분야	세부 지원내용
캐릭터 개발	상점 특색에 맞는 캐릭터 개발 ※ 필수
디스플레이 디자인	상점 내·외부 공간 리뉴얼 (ex. 벽면 페인팅, 시트지 데코, 메뉴판, 디스플레이 방식 개선 등)
상품 및 인쇄물 디자인	상점에 필요한 제품이나 인쇄물 제작 (ex. 포장 패키지, 명함, 스티커, 리플렛, 쇼핑백 등)
브랜딩 및 마케팅	상점 브랜드 개선 및 마케팅 지원 (ex. 로고 제작 등)

※ 간판, 기계설비, 가구집기 등 (처분 가능한)**자산 취득성 품목 지원 불가**, 단순 '기성품' 구매 지원 불가

5. 지원 절차

공고게재	선정 및 협약, 1차 교부	사업수행	중간평가, 2차 교부	최종평가	회계정산
2024. 04.	2024. 05.	2024. 05. ~ 10.	2024. 07.	2024. 10.	2024. 11.

6. 지원 세부 조건

- 사업 기간 내 신규 인력 1명 이상 채용(3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수
-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50% 이하)에 따라 책정

-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예) 지원금 200,000천원시 자부담 현금 20,000천원 이상 부담
- 기업 자부담금 변경 불가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준수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정부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지원금 집행**
- 예산집행 시 집행예정 자금 중 세목별 자부담 비율 이상의 금액을 자부담으로 먼저 집행 후 잔여 금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 (소급 적용 불가)
- 협약 체결 후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회계 정산 및 사업 안내 교육 참여 필수
-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지원 표기 필수

※ 표기 문구 예시 : 해당 결과물은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의 콘텐츠 상점 리뉴얼 지원사업을 통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경상북도·포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 제한 대상

o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 단, 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추후 해당 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

o 신청일 기준 현재 우리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 연구개발사업비 및 지방비 매칭금액 포함

- o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경우
- o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o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o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 o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보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8. 유의사항

-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근로시간 준수(참여 인력 대상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 시간 준수)
-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미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 및 제재 시 즉시 시정해야함(2차 지원금 미지급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협약의 종료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상 목표한 최종결과물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어야 함

3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1. 접수 기간 : 2024. 04. 03.(수) ~ **04. 26.(금), 18:00까지**(마감 시간 후 접수 불가)

2. 접수 방법

- e나라도움(www.bojo.go.kr)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목록 > '콘텐츠 상점 리뉴얼 지원사업'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는 1개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 (폴더명 '콘텐츠상점_기업명')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시 접수 불가하니 시간 엄수
 - ※ 신청서 양식 내 제출 서류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서류 누락시 탈락)

3. 문의처

- 사업관련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담당자 (054-256-3802, 3810)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4.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내 용	
서 식	① 사업수행신청서(대표자 직인 및 자필서명 필수)	• 사업수행신청서, 첨부서류 날인한 스캔본 제출 • ② 사업수행계획서 hwp 파일로 제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서식 3 ~ 10	
별 첨 자 료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신청 시 별첨 자료 모두 스캔본 제출 ※ ⑤ 발급방법 - 국세 : 국세청홈텍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 정부24
	②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③ 최근 3년간('21,'22,'23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④ 참여인력 증빙서류(참여인력 대상)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23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⑥ 인감증명서(개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양식 제출	
	⑦ 포트폴리오 (선택 사항)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업(상점) 제출 서류
	⑨ 소상공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⑩ 건축물대장 등 ※ 점포면적 등 확인용	

-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하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요청 예정

4 선정 방법 및 기준

1. 선정 방법

- 서류 검토 : 적격 여부 확인
(신청 자격 충족 및 모든 서류 제출 확인 시 “통과”, 자격 미달 및 서류 미비 시 “탈락”)
- 발표 평가 : 제출 전반 서류, PPT(10분 발표, 10분 질의)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1-2개사 선정

2. 평가 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 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 목표를 토대로 점포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적절한 소재를 활용한 계획을 기획하였는가? · 점포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캐릭터 개발 및 디자인 계획이 적절한가? · 사업의 구성이 치밀하고 시장성을 갖추었는가?	25점
사업계획의 현실성	· 사업의 일정 및 인력투입 등 계획이 안정적이고 현실성이 있는가? · 기간 내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운영이 가능한가? · 지원에 따른 점포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20점
사업 예산의 현실성	·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었으며 산출 근거가 적절한가?	15점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현실성	· 주 목표시장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가? · 사업화 및 마케팅 계획이 타겟고객과 목표시장에 맞는가?	20점
참여기관의 적절성	· 지원 사업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높으며 사업 관리 능력이 우수한가?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의 제작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경력)이 우수한가? ·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 및 제작 역량이 있는가?	20점
합계		100점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3. 유의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수혜 사실이 확인되거나 자격 변동 및 서류 허위 제출 등의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5 사업 관리

1. 월간 보고

- 평가 내용 : 사업 진척도 및 예산 집행 현황 등 우리 원이 제공한 별도의 양식에 작성·제출하여 과제 수행 매월 점검

2. 중간 평가

- 평가 내용 : 중간결과보고서 및 PPT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수행 진척도, 적합성 등 4개 항목으로 평가

- 평가 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사업 계속", 60점 이상 70점 미만 "재평가", 60점 미만 "사업 중단" 3등급으로 평가

3. 최종 평가

- 평가내용 : 최종결과보고서 및 PPT 발표 자료 기반으로 사업 수행 완성도, 적합성 등 4개 항목으로 평가

- 평가기준 :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성공", 70점 미만 "실패" 2등급으로 평가

※ "실패" 평가 과제는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 수행", "불성실 수행"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성실 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보완 이후 재심의 예정

6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공고 및 접수	2024. 04. 03.(수) ~ 04. 26.(금)	사업수행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e나라도움 시스템 통해 18:00까지 접수
사업홍보	2024. 04. 03.(수) ~ 04. 26.(금)	경북도 내 유관기관 홍보 협조 요청	포스터, SNS 게시 등
서류검토	2024. 04. 29.(월)	적격 여부 확인 후 개별 안내	
선정평가	2024. 5월 중	서류검토 통과 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1-2개 사 선정
협약체결	2024. 5월 중	사업비 조정 후 협약체결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교육	2024. 5월 중	회계 정산 및 사업 안내 교육	교육(필수)
과업수행	협약 체결 ~ 10. 31.(목)	캐릭터 개발 및 콘텐츠 상점 리뉴얼	
중간평가	2024. 7월 중	중간결과보고서 제출 및 발표평가	평가 후 "사업 계속" 기업 대상 2차 지원금 지급(30%)
과제완료	2024. 10. 31.(목)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18:00까지 제출 완료
최종평가	2024. 11월 중	사업결과 최종 발표평가	
최종정산	2024. 11월 중	사업비 회계 최종 정산 처리	

※ 상기 일정은 추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7 준수 사항

1. 필수사항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1명 의무
-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 제한 대상

-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②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④ 참여신청일 현재 재학생
 - 단,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2.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1차 지원금(70%) : 협약체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지원금 신청 후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 제출 시기(별도 안내), 보험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제출 안내 후 15일 이내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 2차 지원금(30%) : 중간평가 후 평가 결과 “사업 계속” 기업에 한해 지급

3. 수행관리

- 사업수행기간 중 과제완료일 1개월 전까지 우리 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활용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우리 원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변경사항에 대하여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 제4장 21조(협약의 변경)에 의거 변경 내용에 따라 우리 원에 승인 또는 통보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보고서에 변경 전 후 내용을 기입해야 함
- 수행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우리 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우리 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우리 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4. 사업비 관리

- 사업자는 사업비의 집행,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여야 함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계좌 활용할 경우, 이자 처리가 완료되어 잔고가 '0원'인 상태에서 운용)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는 반드시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집행되어야 하며, 과제책임자 또는 대표자의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사업비는 사업 기간 내, 사업계획 상 집행계획 내에서 집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동 사항은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라 우리 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을 중단할 경우, 우리 원은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2024.10.31.)까지 사업수행 최종결과보고서 및 PPT 발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함

- 과제 완료 이후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우리 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완료 후 정산·감사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불인정 금액 발생 시 환수 등 우리 원이 안내하는 후속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최종 평가 시 "재평가"로 평가된 과제는 재평가 진행 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우리 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5.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의 귀속

- 과제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저작권,专利权, 보고서 등 지식재산권 귀속은 사업자가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우리 원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협약종료 이후 5년간 우리 원의 요청에 따른 매출액, 고용 창출 등 성과 및 실적 정보 제출을 원칙으로 함

6. 제재 조치

- 중간평가 및 중간평가 재평가 시 "사업 중단", 또는 최종평가 및 최종평가 재평가 시 "실패"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 구분,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사업의 경우,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한 환수 조치 진행

7.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공고문 및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규칙」에 의거함

- 이외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지침」을 준용하며,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사업자에게 있음